

2016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CONTENTS

1 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1
	1. 부패영향평가 개요	2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16년 주요 개정사항	4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6
	4. 부패영향평가 대상	5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0

2 장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요	13
	1. 의의	14
	2. 평가대상	14
	3. 평가 제외 대상	15
	4. 평가방법	15

3 장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23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4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5
	3. 특혜발생 가능성	50
	4.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65
	5.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81
	6. 재정누수 가능성	95
	7. 접근의 용이성	112
	8. 공개성	124
	9. 예측가능성	136
	10. 이해충돌가능성	148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65

참고자료	183
1.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184
2. 부패영향평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96
3. 관련 법령	212

제 1 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① 부패영향평가 개요
- ②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16년 주요 개정사항
- ③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 ④ 부패영향평가 대상
- ⑤ 부패영향평가 기준

1 부패영향평가 개요

1.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2.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3.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4.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와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기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이하)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16년 주요 개정사항

1.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1. 의의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

2.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필요성

-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평가업무의 효율화 도모
-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및 이행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2. 부패영향평가지침 주요 개정사항

▷ 개정 이유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아 현행 평가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부패유발요인을 평가기준에 반영

▷ 주요 개정사항 : 평가기준 개선·보완

현행		➔	개선	
평가 분야 (3)	평가기준(9)		평가 분야 (4)	평가기준(11)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변경>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행 유지>
	특혜발생 가능성			<현행 유지>
집행 기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집행	<현행 유지>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대체>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재정누수 가능성<대체>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분리>
	예측가능성			공개성 <분리>
	이해충돌가능성			<현행 유지>
			부패통제	<현행 유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신설>

- 위탁·대행 업무가 증가하고 관련 부패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대신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으로 기준 대체
- 각종 복지예산 및 국고보조금 예산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대신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기준 대체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 도입의 필요성이나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적용 필요성 여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기준 신설
-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명칭 변경(준수부담의 적정성 → 합리성) 및 기준 분리(접근성과 공개성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 개정지침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1.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28조 제1항, 영 제30조)
 - ▶▶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 ▶▶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총괄

2.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법 제24조, 영 제31조, 지침 제21조, 제22조)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3.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 ▶▶ 소관 법규에 대한 개선·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
 -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등의 작성·제출
 - ▶▶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등

4 부패영향평가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1.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 제·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2.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제·개정 행정규칙의 경우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 현행 행정규칙은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위원회가 특정 행정규칙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3. 자치법규(조례, 규칙)

-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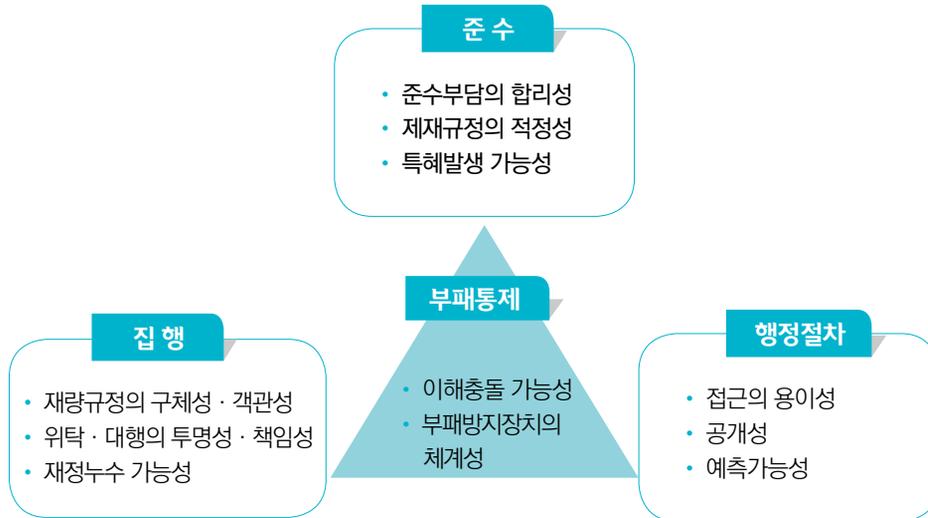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정관, 사규)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평가 실시
-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9항)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개정 법령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 협의단계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병행 평가
	중장기 평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행 법령 평가	현안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제·개정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행정규칙 평가	현행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제·개정 자치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제·개정 및 현행 내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평가요청 받은 정관·사규 평가
공직유관 단체 내부규정 평가			

5 부패영향평가 기준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 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 · 대행 시 위탁 · 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 · 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 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제 2 장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요

- ① 의의
- ② 평가대상
- ③ 평가 제외 대상
- ④ 평가방법

제 2 장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요

1 의의

- 공직유관단체 규정인 사규·정관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07.12.28. 도입)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2 평가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제정·관리하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등 내부규정 중
 - 회계, 계약, 영업, 건설·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내부규정
 -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규정

3 평가 제외 대상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내부규정
 -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 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복지·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4 평가방법

1. 자율평가

▷ 평가 개념

-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제·개정 및 현행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 대상

- 제·개정 내부규정 : 평가제외 대상 규정 등을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현행 내부규정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조리사안 등 부패유발요인이 있어 제·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평가

내부규정 제·개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①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②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문서 관리 약식검토
③ 내부규정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한 준수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④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내부규정 현행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① 현행 내부규정 부패영향 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가 필요한 이유 등을 명시하여 부패영향평가 요청
	
② 평가대상 규정 선정 및 현행평가 협조요청 (평가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 부서에 부패영향평가 협조 요청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서 직권으로 현행 과제 선정 가능
	
③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필요시 외부 자문(권익위, 관련분야 전문가 등) 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④ 개선방안 마련 권고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2. 요청에 의한 평가

▶ 평가 개념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영 제30조 제9항)

▶ 평가 대상

- 공직유관단체 자체적으로 개선 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평가 절차

-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유 및 해당기관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해당 공직유관단체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 결과를 통보 받은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규정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서식

- ①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 ② 평가결과 통보 서식
- ③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분	제정	개정	현행	
형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입안주무 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제·개정 일정 (예정)	관계 부서 협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일간)	
	완료예정일	20 . . .부터 20 . . .까지(일간)		
의견수렴절차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접수순으로 기재

2. 「법령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내부규정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평가서 (별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안) 수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안) 반영 여부를 추후 확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 동의(문서 통보) 	



평가결과 조치사항

- 검토 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입안 주무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 담당부서에 통보
 - 개선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제·개정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 규정명: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제 3 장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③ 특혜발생 가능성
-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⑤ 위탁 · 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⑥ 재정누수 가능성
- ⑦ 접근의 용이성
- ⑧ 공개성
- ⑨ 예측가능성
- ⑩ 이해충돌가능성
-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제 3 장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및 사례

1 준수부담의 합리성

1. 개요

- 평가대상인 내부규정 등의 적용 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사규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2. 평가절차

- ① 준수부담의 근거규정, 절차, 요건 등 검토
- ②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③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3. 평가요령

⊙ 준수부담의 근거규정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 내부규정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정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예시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보완,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의 제한, 특정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 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4.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예시 ▶ **식품위생법 제72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을 규정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는지 검토
 - 각종 비용, 희생 등의 준수부담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지 등

예시 ▶ 전경련·경총 등 사업자 단체, 농어민협회·재향군인회·음식점중앙회·대한 변호사회 등 협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재건축조합 등 조합, 관련 시민단체 등

-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검토

예시 ▶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의 제재를 하고 있는지 등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부담 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 사례 1 재산 관리·처분 업무세칙

평가대상 조문

제25조(입찰보증금) ② 제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공사가 지정한 가상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해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 현황

- 재산 대부·매각 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입찰금 초과분 전부 국고 귀속

❖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사규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 초과분을 모두 국고에 귀속함으로써 입찰자의 혼란 및 경제적 부담 발생

❖ 검토결과

-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사 업무세칙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10%로 적용한 규정을 법령에 근거한 5%로 조정하고, 최저입찰금 초과분은 낙찰자에게 반환
- 민원인(입찰자)의 입장에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5%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사 관리 재산 입찰시도 동일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선결과

재산 관리·처분 업무세칙

제25조(입찰보증금) ① 제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공사가 지정한 가상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낙찰자가 제33조제3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을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시 등록된 낙찰자의 예금계좌로 반환한다. <신 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관련 법령에 비추어 입찰자에게 부과되는 입찰보증금의 규모를 낮추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최저보증금의 최저금액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자라는 정책 대상자에게 가해진 비합리적인 경제적 부담을 합리화한 사례로서 '준수부담의 합리성'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례 2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7조(심사수수료 등) [별표 4 안전인증 등의 수수료]

4. 출장비

가. (생략)

나. 국외출장

공단 여비규칙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를 국외 출장비로 징수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권을 실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제외하고 징수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 현황 및 문제점

- 상위법 제34조(안전인증)에 의하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해외생산제품의 경우, 기관소속 인증심사원의 국외여비를 인증 신청인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안전인증 국외출장 현황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회수	사업장수	회수	사업장수	회수	사업장수	회수	사업장수
계	222	450	77	140	80	172	65	138

- 안전인증 국외 신청인이 안전인증 심사를 잘 받기 위해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의 실질적 심사 비용 증가
 - 심사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요구하는 부패개연성 상존

↳ 검토결과

- 안전인증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는 항공좌석을 공단 여비규칙의 기준이하로 정함으로써 심사비용 증가요인 및 심사원의 부패 개연성 차단
 - ※ 기관 여비규칙(항공운임) : 2등 정액(1급 이하 직원)

↳ 개선결과

제27조(심사수수료 등) [별표 4 안전인증 등의 수수료]

4. 출장비

나. 국외출장

공단 여비규칙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를 국외 출장비로 징수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단 여비규칙에 따른 항공권(좌석등급은 공단 여비규칙의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따른다)을 실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제외하고 징수한다.

▼ 사례 3 정보화업무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2조(감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정보시스템도입법령”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아야 한다.

1. (생략)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황 및 문제점

- 기관은 IT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부패행위 예방의 투명성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을 정하여 제3자 관점에서 IT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 하지만, 현재 관련 사규는 IT감리대상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 관련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제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거조(기관 규정과 동일)〉의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

- 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제외)가 5억원 이상
- 2)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사업과 다수 공공기관의 공동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3) 그 밖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사업

- 기관의 최근 5년간 정보화사업 총 29건(117억원) 중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1건(3.9억원)을 제외하고는 외부감리를 받은 경우는 전무하며, 타 공공기관도 비슷한 상황임

최근 3년간(12년~14년) 관련 기관의 정보화사업 외부감리 실시 현황

기관명	감리건수 및 대상 사업명	사업년도	감리사유
○○기관	1건 (모바일 앱 개발)	2013년	대국민 행정서비스
□□기관	1건 (스마트폰용 하이브리드 어플구축)	2012년	대국민 행정서비스
△△기관	1건 (IT센터 부산이전 및 구축)	2014년	사업비 5억원 이상

- 다양한 IT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높은 본점 사업 담당자들에 의해서만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시스템의 계획·개발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가능성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검토결과

- 현재 외부감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및 계약금액 상관없이 전 직원이나 대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도 내부감리 실시하도록 감리 대상 확대
- '15. 7월 규정 개정 후 9월말 현재 총 3건(3.5억)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2건(3.2억원)에 대해 감사실 감사역, IT분야 박사급 인력 등이 포함된 「내부 IT감리반」을 구성 및 감리 실시하여 사후감사가 아닌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및 내부통제 강화

❖ 개선결과

정보화업무규정

- 제12(감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정보시스템도입법령”에 따라 정보시스템 외부감리를 받아야 한다.(각 호 생략)
- ② (생략)
- ③ 정보화 사업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감리반을 구성하여 내부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 ④ 외부감리의 절차 및 기준, 내부감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화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참고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3.(생략)
- 4.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5.~ 7.(생략)

현황

- 국방부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 제도를 운영
 - ※ 제조 및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업의 시설 기준(같은법 시행령 별표)

구분	장비	장비기준 2	건물면적기준	
금속제품류	전동프릭션프레스 3톤 이상	전기파워프레스 2톤 이상	연면적 100㎡ 이상	
섬유 제품류	모자류	공업용 고속재봉기(96종 또는 100종) 8대 이상	공업용 고속재봉기(2분침기) 2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계급장류	자동식(다두식) 자수기 또는 직조기	1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 아울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요건에도 허가 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군복 및 군용장구 현황

- 군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및 특수군복
-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함,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 헬멧, 방탄복, 배낭

❖ 문제점

-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요건 변경

당 초	개 정(안)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관련 시설(기계·장비 등)의 발전에 따른 동종시설 고도화 또는 현대화 추진으로 시설의 생산능력을 높였음에도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 협의로 해석시에는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도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별도로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의견

- 허가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의 취소 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시설을 통한 생산 능력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 허가신청시의 시설능력 또는 허가신청시 시설의 생산 능력 등 일부 보완을 통한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고방안 마련

❖ 개선결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72호, 2016.1.19.)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제재규정의 적정성

1. 개요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2. 평가절차

- ① 제재규정 검토
- ②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③ 다른 법령, 다른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의 유사 사례와 비교 · 검토
- ④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⑤ 제재의 적정화 방안 강구

3. 평가요령

▶ 제재규정 검토

- 제 · 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규정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관련 부처 법령, 행정규칙, 정관 등 내부규정)과 관련규정 · 내용 모두 검토

제재의 종류 예시

-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차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내부규정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규정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규정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규정의 제재내용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판단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 경중 · 횡수 · 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 · 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규정이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참고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기준》

각급 기관의 제 · 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처벌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개선방향'을 수립 · 통보('09년)하였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11.11.국회사무처 예규 제30호)에서도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징역	벌금형 기준 범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다만, 개별 법률의 특성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 필요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규정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규정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정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 사례 1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처리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8조(부정행위 처리) ①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를 제한한다.

제38조(부정행위 처리) ① 기능수준평가에서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② 기능수준평가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0점으로 처리한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 황

- 정부는 '97년 외국인 연수생의 불법근로, 사업주의 노동착취 등의 예방대책으로 산업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04.8.17.부터 고용 허가제로 전환
- '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도입하였고
- '10년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초기능, 체력,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능수준평가 실시

❧ 문제점

- 기능수준평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미비
 -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답안지 교환, 대리응시, 쪽지 사용, 답안카드 교환, 휴대폰 사용 등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부정행위자는 2년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 기능수준평가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0점 처리할 뿐 시험응시 제한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미비

❧ 검토결과

- 공정한 외국인근로자 선발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기능수준평가에도 부정행위 제재내용 추가 필요

❧ 개선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처리 규칙

제38조(부정행위 처리) ② 기능수준평가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0점으로 처리하고, 평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를 제한한다.

▼ 사례 2 배전공사, 송전정비, 변전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평가대상 조문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

13. 가. 1) 항목별 제재기준 19. 금품·향응 제공

주2) 상기 19번 항목은 당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에 대하여 내부 및 대외기관 으로부터 적발시 금품·향응 수수자(기관직원)에 대한 감사실 징계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 해임 : 계약해지, 정직 : 180일 시공통보 중지, 감봉 : 90일 시공통보 중지, 견책 : 30일 시공통보 중지

「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

23. 협력회사 제재 자격정지 및 취소(제재)

- 11. 뇌물수수 등 부조리로 인한 형사입건 후 1심 유죄판결의 경우 : 계약해지

「 변전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

21.1.2 협력회사 제재

- 8. 뇌물수수 등 부조리로 인한 형사입건 후 1심 유죄판결의 경우 : 계약해지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및 문제점

- 금품·향응 제공 적발 후 협력회사 제재 지연 발생
 - 협력회사의 금품·향응 제공 사실이 확인 되어도 내부직원의 해임 또는 협력회사 직원의 유죄가 판결 될 때까지 계약해지 곤란
- 분야별 협력회사 제재기준 상이로 인한 형평성 저하
 - 배전의 경우는 기관 직원의 징계결과에 따라 제재기준을 적용하고, 송변전의 경우는 협력회사 직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제재기준 적용
- 배전 및 송변전 협력회사 제재 사각지대 발생
 - 동일한 비위행위 발생 시 분야별 상이한 제재상황 발생

비위 행위 적발 사례 #1	계 약 해 지
기관 직원이 협력회사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감사실이 적발하여 해당 직원이 해임 조치 된 경우	>> 배 전 : 가능 송변전 : 불가
비위 행위 적발 사례 #2	계 약 해 지
협력회사 직원이 뇌물 제공 등으로 인한 형사 입건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뇌물 수수자(기관 직원)는 '정직' 조치 된 경우	>> 배 전 : 불가 송변전 : 가능

❖ 검토결과

- 금품·향응 제공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업체 제재기준 강화
 - 금품·향응 제공이 확인되어도 처벌의 수위에 따라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어
금품·향응 제공행위 사실 확인만으로도 “계약해지” 가능토록 개선
- 배전 및 송변전 협력회사의 제재기준 일원화
 - 동일한 행위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강화

As-Is	To-Be
• 배 전 : 금품·향응 수수자 해임 시 • 송변전 : 형사입건 후 유죄판결 시	>> • 대·내외 조사결과 금품·향응 제공 사실 확인 시 “계약해지” (공통적용)

↪ 개선결과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3. 가. 1) 19. 금품·향응 제공

주)2) 상기 19번 항목은 우리회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및 전달행위에 대하여 대내·외 기관 조사 결과 사실 확인시 계약해지 한다. 단)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24차 개정('15.9.11) 후 계약체결 하는 협력회사에 적용한다.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23. 협력회사 제재 자격정지 및 취소(제재)

12 우리회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내부(감사실, 기동감찰팀 등) 및 대외기관 조사결과 사실 확인시 : 계약해지

변전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21.1.2 협력회사 제재

9. 금품·향응 제공 및 전달에 대해 대내·외 조사결과 사실 확인시(감사실, 기동감찰팀 및 대외기관 등) : 계약해지

▼ 사례 3 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3] 평가대상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황

- 최근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가 잇따라 발생
 - 14.1월 신용카드사가 보유중인 고객정보의 무단이용·유출 사실이 드러남
 - ※ 검찰 발표에 따르면 KB카드 약 5,3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NH카드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
 -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CP·회사채 투자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1만6천여명('13.11.5. 기준)이 피해 구조를 요청
 - 한편, 은행의 꺾기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저신용개인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꺾기 적발건수 추이

적발년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건수(건)	99	35	777	1,899	191
금액(억원)	25	3	153	658	136

❧ 문제점

- 다수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예:정보유출), 금융윤리 훼손행위(예: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시장 질서 위반행위(예:꺾기) 등 금융업계의 부패행위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금융시장 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상존

❖ 검토결과

-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금융업계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제재의 엄정성을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법규준수의식을 제고할 필요
 - 고객정보 부당이용·유출행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및 은행의 구속행위 금지 위반 관련 양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고유 업무수행을 통해 금융업계의 잠재적인 부패유발요인을 억제

❖ 개선결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

* (위반건수)부당이용:정보주체수×부당이용일수, 유출:정보주체수×유출횟수

제재양정	부당이용	유출
업무정지(정직)이상	500건 이상	50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	5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5건 이상	1건 이상
주의	1건 이상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판매금액, 건수	유형1, 2	유형3	유형4
기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기관주의	기관주의

꺾기 [기관 제재]

수취건수 내지 위반점포비율	제재양정
50건 이상이고 10%이상	기관경고 이상
30건 이상	기관주의

▼ 사례 4 주택사업운영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1조(연체료) ① (생략)

② 제항에 따른 연체료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황

- 기관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 임대료 등을 연체시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연체료로 부과하고 있음

❖ 문제점

- 연체료율 규정은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체료, 퇴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임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연체료율로 적용하고 있지만, 저금리에 따른 정기예금 금리 하락으로 채무불이행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낮아짐
 - 2016년 기준 연체료율 : 3.3%
 - 연체료율이 일반 은행 대출금리와 비슷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기능 상실
 - ※ ○○기관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 지연시 7.5% 적용

❖ 검토결과

- 임대료 연체, 퇴거지연에 따른 가산 연체료가 낮아 연체료를 강화할 필요성
 - 낮은 연체율로 인해 고의로 퇴거를 거부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사례 발생을 억제

❖ 개선결과

주택사업운영규칙

제21조(연체료)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연체료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4배에 해당 하는 금리로 한다.

참고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 관광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중 2호 개별기준의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4의2호	30만원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4의3호	50만원

현 황

- 관광진흥법 제86조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평가대상 조문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2개를 추가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0만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50만원)

문 제 점

-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적용기간 및 산정기준 미규정
 - 위반횟수의 적용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산정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위반횟수 산정기준을 ‘과태료 부과처분일’이나 ‘위반행위 적발일’ 등으로 달리 적용할 우려가 있음

-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 미흡
 -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여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 개정안 제41조제2항에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제3항에서는 “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

❧ 개선의견

-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 기준 명확화
 - [별표5] 과태료 일반기준에 위반 횟수 산정기준 및 위반횟수의 적용기간 규정 마련
 - ※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과태료 처분을 한 날’, 2차 이상 위반 시 기준일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규정
-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 ※ 별표5. 각 위반행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

❧ 개선결과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41호, 2016.6.21.)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2	30	60	100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3	50	100	100

3

특혜발생 가능성

1. 개요

- 내부규정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2. 평가절차

- ① 수익적 규정 검토
- ②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 ③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④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3. 평가요령

⊙ 수익적 규정 검토

- 내부규정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규정에 위임된 경우 하위규정의 관련조항까지 모두 검토
 - 예시** △입찰자격인정,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 등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규정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예시 ▶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규정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예시 ▶ 수익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혜택 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규정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 사례 1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리 요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 (채용의 원칙) ③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채용할 때
3. 고용기간이 6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 기관은 인력의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구성
 - 급식보조 인력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타 기관 대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매우 적음

구 분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원	5	2,685	13	-
현원	5	2,597	4	18

❖ 문제점

-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원이 극히 적어, 관리규정 등 제도적 장치 미흡
 -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와 직원가족 채용은 정규 직원 채용시에만 금지
- 채용비리는 특별채용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며,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는 사례 빈발

유사 부패 사례

광양시, 취업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고발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B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A씨가 2010년 당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신고와 제보를 받았다. 실제 2009년 시 고위직 간부로 근무하던 A 씨는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듬해인 2010년 자녀 2명을 공기업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명의 아들 중 첫째 아들은 A 씨가 시 본청에 근무할 때 시 산하 공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둘째는 A 씨가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것. 2014.11.10 국제뉴스

↳ 검토결과

-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 및 직원가족 특별채용 금지 조항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채용에도 적용
 - 인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시켜 인사비리 발생 가능성 최소화

↳ 개선결과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리 요령

제6조 (채용의 원칙) ③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다만, 공사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공직자와 직원가족은 특별채용 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거나 정부지시가 있을 때
2.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채용할 때
3. 고용기간이 6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 사례 2 주택사업운영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28조(임대기간)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입주자나 그 배우자가 공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임대기간의 제한 없이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1. 공단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 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 임대주택

⑥~⑨ (생략)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 현황

- 기관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 전국 70개 단지에 약 2만 1천 세대 운영 중
 - 기본 거주기간 : 기본 2년 + 2년 1회 연장 가능
 - ※ 추가연장 조건에 해당시 2년씩 추가연장 가능
- 한편,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나 배우자가 분양 주택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의 제한 없이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계약 가능

❖ 문제점

- 공무원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되어 공무원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 공무원 임대주택 계약자가 분양 주택 등을 공급받은 경우 임대기간의 제한 없이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악용하는 부당 거주사례 발생

- 분양주택(A)을 공급받아 계약기간 연장 후, 입주 만료시점에 동 분양주택(A)을 전매하고, 새로운 분양주택(B)을 공급받아 다시 동 분양주택(B) 입주예정일 까지 계약기간 연장

2년	2년	2년	2년
최초 계약	재계약	재계약(A분양주택)	재계약(B분양주택)

※ 법률자문 결과 현행 규정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연장 가능

❖ 검토결과

- 분양 주택 공급 등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부당 거주사례 예방
 - 임대주택 부당 입주로 인한 다른 공무원의 입주기회 상실 방지

❖ 개선결과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임대기간)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입주자나 그 배우자가 공급받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임대기간의 제한없이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1~2 (생략)

⑥~⑨ (생략)

▼ 사례 3 해외사무소 근무 등 국외이전시 총무규정

평가대상 조문

(별표 6-5) 국외이전료정액표

(단위 : US\$)

구 분	뉴 욱	파 리	동 경	북 경	하노이	부쿠레슈티	자카르타
1(갑)~2직급	3,650	4,170	2,410	2,990	3,310	4,780	2,990
3직급	3,480	3,970	2,290	2,850	3,150	4,550	2,850
4(갑)직급 이하	3,310	3,770	2,180	2,710	2,990	4,320	2,710

주 : 해외사무소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신설해외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사무소의 이전료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 현 황

- 해외사무소 근무 등 국외이전시 총무규정 [(별표 6-5) 국외이전료정액표]에 따라 국외이전료를 지급하고 있음

❖ 문제점

- 국외이전료를 직급에 따라 이전지역별로 정액지급 함으로써 개인에게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검토결과

- 직원의 국외이전료 지급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수준으로 개선
- ○○기관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수준으로 국외이전료를 지급하고 있음
 - ※ 청렴 우수기관과의 협력 회의('16. 00. 00.)시 도출한 사규 개선사항

➤ 개선결과

(별표 6-5) 국외이전료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 제곱미터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주 : 1. (삭제)

2. 내륙국가로 해상운송이 곤란하거나 단신부입하는 등의 사유로 항공운송을 이용할 때에는 300kg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선박운송시 15세제곱미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 직급, 지역구분에 따른 국외이전료의 정액지급으로 인해, 특정개인에게는 수익이 발생하는 등 특혜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특혜발생 가능성'에 해당하는 사례임
-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타기관 사규를 참조하여 해당 기관의 사규 개선사항을 발굴한 사례로서 의의를 지님

▼ 사례 4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10조(보수)

③ 성과급은 전년도 해외조직망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월 미만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한다. 다만, 퇴직 시 _____ (중간생략) _____ 따라 지급한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황

- 현재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현지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 지급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해외지사장의 과도한 재량 남용 및 특혜발생
 - 해외지사장이 현지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담당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하게 재량을 남용하여 일부 현지직원에게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 특혜발생 가능성 상존

↳ 검토결과

- 현지직원 성과급을 전년도 해외조직망 경영평가결과를 평균등급(B등급) 100%를 기준으로 등급별 $\pm 5\%$ 차등하여 지급하게 하여 해외지사장의 과도한 재량남용으로 일부직원에게 특혜가 발생할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

↳ 개선결과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

제10조(보수) ③ 성과급은 전년도 해외조직망의 경영평가결과 평균등급(B등급) 100%를 기준으로 등급별 $\pm 5\%$ 차등 및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월 미만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한다. 다만, 퇴직시 _____ (중간생략) _____ 지급한다.

참고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

현황

-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소득 계층별 다양한 품질의 임대주택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의 직접 건설방식은 시행자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함에 따라

* ○○기관 부채/부채비율 : '12년 138조(466%)

⇒ ○○기관은 국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해 '부채동결선언'('13.11.4)

임대주택 공급계획(준공기준)

계	건설 임대	국민	영구	공공임대		매입·전세
				공공	민간	
정부11.0만호	7.0	3.8	1.0	1.2	1.0	4.0
LH 8.3 만호	4.8	3.0	0.8	1.0	-	3.5

-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 부동산투자회사 인가 현황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2014.4월 현재)

구 분		'14.4	'13	'12	'11	'09	비 고
부동산 투자회사 (개)	계	84	79	72	70	48	
	①자기관리	12	12	15	15	5	
	②위탁관리	43	35	25	21	12	
	**기업구조조정	29	32	32	34	31	
자 산 규 모(조)		12.3	11.4	8.2	8.2	7.6	

- ① 자기관리리츠 : 실체형 회사로 자산관리회사 없이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
- ② 위탁관리리츠 : 명목형 회사로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형태가 있으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리츠 : 기업의 채무상환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구성하여 설립된 회사

❧ 문제점

- 개정안은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후 부동산투자회사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추첨이나 공개경쟁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하여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개선의견

-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용도를 임대주택건설로 한정

예시

개 정(안)	개선내용
<p>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p> <p>① ~ ④ (생략)</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생략)</p> <p>1. (생략)</p> <p>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p> <p>2. ~ 11. (생략)</p>	<p>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u>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u></p> <p>2. ~ 11. (현행과 같음)</p>

❖ 개선결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3호, 2014.7.28.)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의 2.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공급할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 개요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담당자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규정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2. 평가절차

- ①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②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③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④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⑤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3. 평가요령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규정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시행세칙, 사업부서의 자체 기준 등 하위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않은지** 검토
- 규정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관련규정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하위규정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 행사범위가 구체적인지 검토
 -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을 검토

예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

- 다른 규정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관련 규정에 근거 없이 하위규정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지** 검토
-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위규정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상위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견제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에 대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의 처분기준이 설정 · 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예시 ▶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 · 산업 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하게 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 등에 명시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세부개념으로 구체화

예시 ▶ [허가기준]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통한 보완

예시 ▶ [등록취소]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이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의]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를 말한다.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예시

예시 ▶ [집회 및 시위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불확정 개념의 계량화

예시 ▶ ‘경제적 신용’, ‘대외적 신인도’, ‘충분한 인력과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의 불확정 개념

▶▶▶ 자본금, 시설·설비의 종류·규격·면적, 종사인력의 자격·수 등으로 계량화

-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하위규정 정립

예시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업무편람

가. 임금에 포함되는 것 : ~

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 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 ·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사례 1 인사규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출제 및 출제위원) ① 시험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채용대행기관에 출제를 의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자
 2. 당해 시험과목에 대해 출제한 경력이 있거나 이를 전공한 자
- ②~⑦ (생략)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황

-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해 직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실시
 - 시험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채용대행기관에 출제를 의뢰하거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출제하고 있으며,
 - ※ 출제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자 및 당해 시험과목에 대해 출제한 경력이 있거나 이를 전공한 자
 - 시험출제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문제점

- 출제위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적합하지 않은 출제위원 위촉 가능
 - 직원 채용시 직렬 및 직급에 합당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며,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는 경우에 출제위원이 시험문제 출제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 시험과목에 대해 출제한 경력이 있거나 이를 전공한 자”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그 결정권자의 재량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출제위원을 위촉할 가능성

- 시험 출제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출제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으나, 응시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출제위원에서 제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검토결과

- 시험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량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 시험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출제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 개선결과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출제 및 출제위원) ① 시험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채용대행기관에 출제를 의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하되, 채용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1. 당해 분야에 박사학위 이상인 자
2. 당해 분야에 석사학위가 있는 자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당해 분야에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당해 시험과목에 대해 출제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례 2 재무운영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7조의3(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사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 경우 각 기관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 우선 사용하고 매년도 결산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현황

-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 다른 적립금과는 달리 본사 승인만으로 우선 사용 후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예외로 하고 있음
 - 긴급을 요하는 구호활동 시 행정절차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즉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구호사업비축적립금 : 대규모 재난구호 또는 구호사업 개량을 목적으로 매년도 결산 시 당해연도 구호비 예산잔액을 적립금으로 비축되는 계정
- 그러나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을 사용한 내역 중에는 긴급을 요하지 않고 당해연도 구호비 지출예산으로 집행해야할 정기적인 구호물자 구입비나 생계지원용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집행내역 포함

지사	사용처	금액
○○지사	비축분 구호물자 정기 구입비	25,000천원
○○지사	비축분 구호물자 정기 구입비	18,247천원
○○지사	비축분 구호물자 정기 구입비	22,668천원
○○지사	비축분 구호물자 정기 구입비	25,868천원
○○지사	비축분 구호물자 정기 구입비	31,000천원
○○지사	명절 취약계층 생계지원 물품 구입비	46,561천원

❧ 문제점

-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분명하고 구체적 ·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과도한 재량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제 17조의3(적립금의 사용)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일반적인 적립금 사용절차의 예외상황에 대한 구체적 집행목적의 명시이 필요하고,
- 그 예외적 사용처를 정하는데 있어 예외적 절차를 허용하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재량범위 및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 구호사업비축적립금의 운영위원회 사전승인의 예외적 허용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의 명시 필요
- 구체적 사용기준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즉시적으로 사용 긴급을 요하는 구호활동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개선결과

재무운영규정

제17조의3(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사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호사업비축적립금 중 국내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사용의 경우 각 기관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 우선 사용하고 매년도 결산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례 3 주택관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31조(기능) ① 자치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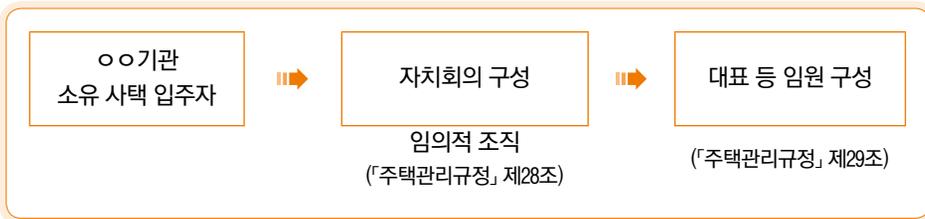
1. 본회와 사택관리 협의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 관리사무소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사업계획·수지예산·결산의 승인 등)
3. 관리비의 책정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4. 자치회 운영규약의 제정·변경
5. 사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사택관리에 관한 사항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황

- 자치회 구성



- 기관과 사택관리 협의, 관리사무소 관리·감독, 관리비 책정 및 집행감독, 사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운영·관리 등 자치회의 권한이 방대

❖ 문제점

- 주택의 제공은 기관의 직원 복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자치회의 법적 지위는 「주택법」 제43조제4항의 관리사무소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관리단과는 구별
- 오히려 주택의 관리자는 “본부” 또는 “지사”이며(제4조), 관리방법 역시 주택관리자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제5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사택관리 협의, 관리사무소 관리·감독, 사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운영·관리 등에 자치회의 참여권 인정은 자치회에 재량권을 과도하게 보장하여 특혜를 주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 존재

❖ 검토결과

- 기관과 사택관리 협의, 관리사무소 관리·감독, 사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운영·관리 등을 자치회의 기능에서 삭제하고, 제35조제3항에서 파견 직원 외 관리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은 자치회의 결정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치회의 결정사항으로 함
-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자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35조의 관리사무소의 구성(인력 채용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치회가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에 관한 감독이나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도록 규정

❖ 개선결과

주택관리규정

제28조(기능) ① 자치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단서 삭제>

1. 관리비의 책정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 제35조의 관리사무소의 구성(인력 채용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회의 구성,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을 포함하는 자치회 운영규약의 제정·변경
4.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자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사례 4 재산관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24조(재산의 대부) ① 공사 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8. (생략)

9. 기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때

제26조(대부기간) ① 공사 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물 및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 3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사장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8.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가능성

❖ 현황

- ① 기관은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총 000세대) 사업을 하고 있음, 또한 00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00 시설 입주자 선발 시 공모를 통하여 평가기준을 가지고 입주자를 선발
- ② 00 시설 중 상가 층은 일반인들에게 임대하고 발생된 수익으로 00 시설의 운영비용으로 일부 충당하여 사용하고 있음
- ③ 기관은 토지개발사업 및 주택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면서 더 이상 사용이 필요치 않은 재산을 현재 보유하고나 앞으로도 추가로 보유 예상

❧ 문제점

- ① 재산관리규정 제24조1항9호에는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공사의 자의적 운영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특혜발생 소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임
- ② 재산관리규정 제26조1항1호 단서 조항에는 공사의 자의적 운영을 통해 임대계약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임
- ③ 재산관리규정 제31조의3 8호는 공사의 자의적 운영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재산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혜발생 소지가 있는 조문임

❧ 검토결과

- ①, ②, ③ 공사 재산관리규정 중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조항 삭제

❧ 개선결과

재산관리규정

제24조(재산의 대부) ① 공사 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9. <삭제>

제26조(대부기간) ① 공사 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물 및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삭제>

제31조의 3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사장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8. <삭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사장이 인정할 때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 존재
→ 사례처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방안 외에도 심의·의결 절차를 통하여 예외를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참고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3. 법 제21조제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
 4. 법 제21조제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현 황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면허 취소 사유>

- ① 결격사유자(필수적 취소사유)
 - 정신질환자
 - 마약류 중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 되지 아니한 사람(1년 이후 재발급 가능)
- ②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1년 이후 재발급 가능)
-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후 재발급 가능)
- ④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후 재발급 가능)

- 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의 무조건적인 재발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 면허 취소 경위,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발급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청의 재량 기준을 부가적으로 신설

❖ 문제점

- 면허증 재발급 거부 사유가 모호하고 추상적
 -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 취소 경위와 동기”의 사안별 경중(輕重)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기준이 없고
 - “반성의 기미”,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는 판단”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음
-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의료기사 등과의 친소(親疎) 관계 등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재발급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으며
 - 고의·악의적인 범법자나 누범 우려자 등이 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한 담당 공무원 로비 등 부패유발가능성 내재

❖ 개선의견

- 면허증 재발급 거부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

※ 본 개선권고와 관련되는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3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 수정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예시)
<p>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의 기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p> <p>(신 설)</p>	<p>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인정되어도 <u>다음 각 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조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받은 형이 0년 이상인 경우 3. 0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개선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38호, 2014.11.19.)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누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누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누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 개요

- 행정권한·사무의 위탁·대행 등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근거,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 등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평가¹
 -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2. 평가절차

- ① 위탁·대행의 근거규정, 요건 등 검토
- ②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③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④ 수임·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1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3. 평가요령

㉠ 위탁·대행의 근거규정,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대상 및 범위가 상위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검토

예시 ▶ **법률** :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 :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예시 ▶ 위탁·대행 요건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위탁사무의 대상이 단순행정업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참고

민간위탁 기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행 관련 유의사항

- 업무의 대행 제도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또한 대행은 법률적 효과가 대행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대행의 결과를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대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법령 입안·심사 기준 중)

-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편의 위주의 위탁·대행으로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포괄조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 “○○○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예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참고 ▶

민간위탁·대행 절차 규정

- **민간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공개모집,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0조~제16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규정 필요
- **대행**: 행정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라면 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정절차 등에 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 필요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 위탁·대행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탁·대행 업무의 관리를 위한 자료 요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는 경우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 제재 근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²

예시 ▶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대행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수탁·대행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2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규정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예외의 경우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 가능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 사례 1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처리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83조(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① 이사장은 보험사업자로부터 인수한 휴면보험금을 원 권리자에게 찾아주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EPS센터, 송출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휴면보험금 원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해당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재불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항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송출국가 일간지, EPS센터, 송출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 권리자가 휴면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보험사업자로부터 이관 받은 휴면보험금 등은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 휴면보험금 원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보험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 현황

- 기관은 '04년부터 발생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143억원 상당)을 전용보험사로부터 이관받아 유관기관과 함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 중
 - ※ 휴면보험금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퇴직금), 귀국비용보험(항공권)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
- 휴면보험금은 전담은행사를 선정하여 예치하고 자금관리, 해외송금 등의 업무를 전담은행사를 통해 수행

❖ 문제점

- 전담은행사 선정기준 미비로 특정 은행사 특혜 및 유착 가능성
 - 휴면보험금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용방법,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및 선정기준이 없어, 특정 은행사에 특혜를 주거나 직원과 은행사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우려
- 휴면보험금 안정성 및 수익률 보장을 위한 자금운용 기준 미비
 - 전담은행사의 자금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률과 안정성 등의 내용이 달라지나, 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수익률 저하 및 원금손실 등 발생할 우려

❖ 검토결과

-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예치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은행사 선정기준 및 절차 내규화
- 전용보험사로부터 공단으로 인수한 휴면보험금 등에 대한 자금관리 및 운용 기준 마련

❖ 개선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처리 규칙

제83조(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1항의 휴면보험금 등을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등 원리금보장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금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전담은행사를 선정하여 휴면보험금 등의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⑥ 제5항의 전담은행사는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 사례 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8조(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공사주관부서는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후에 그 대가 지급 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①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주관부서에 보증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접근성과 공개성

❖ 현황 및 문제점

-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등의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성금 및 준공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후 하도급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원도급업체에 의한 지급지연,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정 제정 필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사례

- 2014 국정감사 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공기업의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지연 및 어음지급 등 하도급 대금관련 위반사례가 지난 5년간 1,110건이나 발생했다.” 고 주장.
- 기관별로 한국도로공사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너) 115건, 수자원공사가 28건, 한국철도공사 3건 등이며, 위반에 따른 처분내용으로 시정명령 272건, 영업정지 24건, 과태료 7건, 과징금 1건 (2014.10.13 건설신문)

부패 발생유형	부패 발생원인	파급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대금지급 단계 • 유형:불공정 거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 및 절차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 도덕적 해이 초래 • 불공정행위자 제재의 실효성 저해

↳ 검토결과

-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기성대가 지급기한을 제정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을 위한 규정 제정

↳ 개선결과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의 지급조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지급내역을 공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수령내역을 공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③ 공사주관부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형태(현금, 어음, 대물등 기타방법),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준수, 지급 방법 등 하도급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참고 제 · 개정 법령 평가 사례 : 군인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0조의11(업무의 위탁)

1. 법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중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국방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군인사법」 제46조의4제5항을 근거로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국방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방자격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규정

국방분야 국가자격 현황

- 근거법령
 - 군인사법 제46조의 4(2012. 12. 18)
 - 시행령 제60조의4 내지 제60조의10(2013. 6. 17.)
 - 시행규칙 제83조의2 내지 제83조의10(2013. 6. 26.)
-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현황 및 향후 계획
 - 현황 :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 계획 : 2016년 이후 매년 2개 종목 이상 30여개 종목 신설
-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시행 : '14~'15년, 3개 종목 년 1회(주관 :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

❧ 문제점

- 위탁 업무를 포괄적·불명확하게 규정
 -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중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라고 규정하여 위탁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업무 위탁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
- 위탁 요건에 대한 기준 없이 특정 단체에 위탁
 - 수탁기관의 인적·물적 요건 등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없이 '국방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 ※ '국방 관련단체'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없어 법정위탁인지 지정위탁인지 알 수 없음
 - 행정청에서 임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우려와 행정청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요건을 정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변경이 용이해 수탁을 원하는 기관·단체에서 불법적으로 로비할 가능성 내재
- 국방 관련단체의 범위가 불명확
 - '국방 관련단체'가 어떤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자격요건만 갖추면 어떤 기관(단체)이건 국방 관련단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행정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
 - ※ 수탁기관(단체)이 공공기관인지 민간 법인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수탁기관(단체)의 지위·성격에 맞는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 마련이 어려움
-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미규정
 - '수탁기관의 선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청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할 우려와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접근성·투명성 제한
- 수탁기관(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 수단 부재
 -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규정이 없어 위탁업무의 관리·감독 및 통제가 어렵고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탁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하여 책임성 확보가 어려움

❧ 개선의견

- 위탁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인적·물적 기준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
- 위탁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수탁기관(단체) 선정절차·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
 - ※ 법정위탁, 지정위탁 등 위탁 방식에 맞춰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벌칙 등 제재 수단 마련
 - 공무원이 아닌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벌칙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처분 규정 마련
 - ※ 위탁 취소,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며, 위탁 취소, 벌칙에 대한 규정 마련 시 위탁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 ※ 수탁기관(또는 단체)의 종류, 위탁 방법 등에 따라서 반영 여부 및 제재수단 결정

❧ 개선예시

-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시행령 개정사항

개정안	개선 의견(예시)
<p>[별표 7]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p> <p>1. 일반기준</p> <p>가. (생략)</p> <p>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p>	<p>[별표 7]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p> <p>1. 일반기준</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u>최근 0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u>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p>

• 법률 개정사항

개정안	개선 의견(예시)
<p><신설></p>	<p>제2조(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p> <p>①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경우 2. 위탁받은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3. 4.
<p><신설></p>	<p>제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p> <p>제2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p>

6 재정누수 가능성

1. 개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2. 평가절차

- ①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근거규정, 요건, 절차 등 검토
- ②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④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검토

3. 평가요령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근거규정, 요건, 절차 등 검토

-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⁴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4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라야 함

- 특히 타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및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을 검토

예시

- 국가예산 보조, 출연, 출자, 국·공유 재산의 사용, 대부 등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가기간 연장, 양여 등 국유재산법상 특례 등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주체, 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검토

- 위법·부당한 재정지원 신청 등에 따른 지원취소 근거규정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검토 결과
•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⁵ ?	
• 타 법령 또는 규정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⁶ ?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⁷ ?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⁸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⁹ ?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¹⁰ ?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 5 수의계약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패발생소지 검토 필요
- 6 가령 국유재산대부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 7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라면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9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1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음

▽사례 1 자금운용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8조(자금의 운용) 공사의 금융상품 투자자금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자산군을 운용 대상으로 한다.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외신용등급이 S&P 기준으로 (A)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인 해외채권

1. 외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관(정부가 투자하였거나 또는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2.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 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3.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으로 제8조 제3항부터 5항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 현황

- 지상파TV 방송광고 판매매출의 하락으로 기관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예상됨에 따라 자금운용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신규투자상품(해외 채권)의 투자 근거 신규 마련
 - 해외채권 투자기준 : 해외신용등급 S&P(A) 이상 해외채권
 - 해외채권 투자대상 : 해외신용등급이 S&P 기준으로 (A)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해외채권

❖ 문제점

- 해외신용등급이 S&P 기준으로 (A)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인 해외채권에 한하여 투자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환율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환위험 리스크가 있어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해당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환율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환위험 리스크가 있어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헷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선결과

자금운용규칙

제8조(자금의 운용) 공사의 금융상품 투자 자금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자산군을 운용 대상으로 한다. ①~⑤ (현행과 동일)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외신용등급이 S&P 기준으로 (A)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인 해외채권(해당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발행기관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단, 환헷지 방안이 마련된 경우에 한한다.

▽사례 2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기관 소유 또는 관리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제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 충돌 가능성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지방사무소(31개)에서 약 17,000개의 공용재산을 관리·사용하고 있음
- 특히, 고지대 대피소 및 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곤란하고, 직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근무지 산재 → 관리 누수 가능성 내재
- 타기관에 비해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및 관리 소홀 등 부패 개연성이 있어 효율적 통제기능 필요

*공용재산 관리 소홀 및 사적사용 부정행위 적발 사례

구분	내 용	처분내역	비 고
관리소홀	종합감사 시 현장관리용 디지털카메라의 관리 소홀(부실)로 5개 사무소 25대 분실, 적정 불용처분 없이 폐기처분 사례 적발 ('14.3월, 4월, 9월, 10월)	행정상 통보	디지털카메라 5개 사무소 25대
	사업비로 구입한 국유재산을 자산으로 미등재한 상태로 관리(154개)	행정상 시정	○○○사무소
사적사용	'13.7.16. "공용차량을 인근 주민이 사용" 민원제기, 특정감사 실시	신분상 경징계 (1명)	정규직원 5명 근무

-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공용재산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며, 특히, 본부에서도 모니터링(통제)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검토결과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하는 단순한 제도만으로는 현재의 국유재산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점 근절이 어려우므로 사적사용 적발 시 비용의 전액(손해액의 3배)을 환수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 RFID¹¹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공용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용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본부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추진

❖ 개선결과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 ① (현행과 같음)
- ② 임직원 중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비위행위 적발 시 그 사용·수익 비용의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을 환수 조치한다. <신설>

1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소형 반도체칩이 내장된 태그를 물품에 부착하여 물품정보를 전파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기술

▽사례 3 연구개발관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6조(사용범위) ① 연구개발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비
2.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3. 연구개발 운영 및 시설비
4. 인력양성 및 전산개발비
5. 전력기술과 관련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관련기관에 대한 출연
7. 기타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지적재산권 관리비용 및 보상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현황

- 현재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비 등 8개의 사용범위로 정의되어, 연구개발 범위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운영중

❧ 문제점

-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R&D와 연관성이 없는 예산명이 포함되어 실적 부풀리기 등 통계상 왜곡발생
- R&D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범위로 분류되어 재정누수 및 예산사용의 불투명성 잠재
- 객관적인 연구개발비 산정이 어려워 대내외 연구개발 투자 현황 산정 및 집행시 재정안정성 확보가 미흡

연구비 비리 유형

- 감사원 R&D 감사('08~'12) 결과 총 548건 중 387건이 연구비집행 부적정 사례 지적
 -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횡령,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 (출연연) 위장가맹점(유형주점)에서 부정사용 등
 - (기업) 유명회사 설립·거래, 회사 경영자금으로 전용, 납품기업과 공모 등

❧ 검토결과

- 정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사용범위 축소 및 명확화

❧ 개선결과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6조(사용범위) ① 연구개발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비
2. 연구개발 운영 및 시설비
3.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관련기관에 대한 출연
4. 기타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적재산권 관리비용 및 보상

▽사례 4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시행세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16] 4. 자격수당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2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2종 이상일 경우에는 1종만 지급한다.

❖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 현황 및 문제점

- 자격수당은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2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

자격기준별 지급수당

자격기준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전문자격사
수당(원)	30,000	40,000	200,000

- 그러나 (1)불명확한 자격수당 지급자격 판단 기준, (2)보직변경에 따른 수당 상실신청 미통보(업무 연계성 소멸時)등의 사유로 자격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 문제점 발생
- 자격수당 부당지급과 관련 끊임없이 이슈화가 되는 만큼 규정·지침 정립을 통한 근원적 방지노력 필요성 절감

자격 수당 부당 지급 관련 타기관 사례

- △△기관, 예산 낭비 심각(2013-02-13, 경기일보)
 - 같은 공사를 두 번 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가족·초과근무·기술자격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부공무원은 가족수당을 1명에게만 지급해야 하지만 기관 측은 이들 모두에게 2년여 간 가족수당을 지급했고, 자격증이 없는 수영강사에게도 2년여 간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해오는 등 수당지급 제도에 허점을 드러냈다.

- 이에 따라, 주관부서에서는 자격수당 지급현황을 일괄점검, 지급자격상실 미통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자격수당 지급자격상실 미통보 현황 일괄점검 결과 (13.05)

성명	해당자격증	미통보 사유	과다수금액(원)
000	지적기사	자격오인	1,440,000
000	정보처리기사	자격오인	1,440,000
.	.	.	.
.	.	.	.
.	.	.	.
000	수질환경기사	부서이동	1,440,000
000	일반기계기사	부서이동	1,440,000
합계		총14명	15,160,000

검토결과

- 자격상실 미통보 건에 대한 환수조치(15,160천원 환수완료, '14.02)

환수인원	해당자격증	사유	환수금액
14명	지적기사, 토목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과 업무 연계성 불인정	5,920,000원
		부서이동(보직변경) 미통보	9,240,000원

- 제도적 보완을 통한 재발 방지방안 마련
 - 허위통보·지연통보·미통보 시 벌칙조항 추가(세칙 제4조의8)
 - 자격수당/자금관리수당·선임수당 등 유사수당 지급제외 조항 신설 (세칙 제4조의11 제2항)
- 기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자격수당지급지침) 추가 제정
 - 부서·업무분장별 인정자격증을 명확히 열거하여 지급기준의 명확성 및 구체성 강화(자격수당 지급지침, '14. 10 신설)
 - 업무이동에 따른 자율 상실신청 확대 및 자격지급요건의 명확화로 인해 연간 수당 지급 규모 축소
 - 지침 적용시 추가 3명 지급중지 및 1명 환수(연간 800천원 절감)

연도별 자격수당 지급 감소액

해당연도	자격수당 지급액(원)	전년대비 감소액(원)	지급감소율
2012	29,440,000	△8,840,000	△42.9%
2013	20,600,000		
2014(추정)	17,080,000	△3,520,000	△20.6%

↩ 개선결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시행세칙

제4조의8(제수당의 지급자격 변경) ② 임직원이 제1항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내 미통보, 허위신고 등 허위의 방법으로 연봉제보수규정 제10조의 해당수당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초과지급 기간만큼 해당 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4조의11(자격수당) 동일업무 유사 자격수당에 대해서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표>부서·업무별 인정되는 자격증 <신 설>

✓ **참고**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생략)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로지원금)

-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현 황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구정을 신설
 - 소득기준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급토록 변경하는 한편,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른 시행령 개정
 - ※ '위로지원금' 관련 개정법률 조항
 - 법 제9조제1항 :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법 제9조제3항 :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률에 따른 한센인 피해자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매월 피해자 개인당 15만원(국비 100%)
-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금액

- 법률 개정(생활지원금→ 위로지원금) 배경
 - 한센인에 대한 오해 및 편견 등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국가에 의한 격리수용 정책으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되어 감금·단종·폭행 등의 인권유린을 경험
 -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약 64백여건의 피해 사례확인 (기간: 광복이후 1970년대까지)
 -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¹²
 -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위로 지원금을 지급토록 법률을 개정

한센인 관련 통계 및 지원현황

- 한센인 : 총 11,303명 (국립소록도병원 566명, 재가 6,673명, 정착농원 9개소3,645명, 보호시설 6개소 420명/ '14년)
- 피해자 : 3,884명 ('16.1월)
- 위로지원금 지급 : 3,284명 ('16.1월)
- 의료지원금 지급 : 3건('12년), 4건('13년), 1건('14년), 0건('15년)

12 보건복지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발췌·인용

❧ 문제점

- 위로지원금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위원회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지급방법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예측가능성 저하
 - 법 제9조제3항은 “의료지원금 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시행령에서 금액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
 -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원회가 결정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포괄적이고 과도한 재량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이미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어 반복에 불과
 - ※ 시행령에서는 위로지원금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인지, 입소기간이나 노역기간 등을 고려할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임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측면에서도 위로지원금의 금액 수준 및 지급방법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지급으로 할 것인지 등 지원 수준 및 방법 등 구체화 필요
 - 또한 법률에 한센인 지원이 ‘의료지원금’과 ‘위로지원금’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새로운 지원사항을 결정토록 하여 위원회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
- ‘위로지원금’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벌칙 조항 부재

❧ 개선의견

추후 법률 개정 시 반영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지원금 수령 시 벌칙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신설〉	<p>제△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 벌칙의 수준은 과거사 피해 관련 벌칙에 준하여 예시로 들었음</p>

이번 시행령 개정 시 반영사항

- 위로지원금 금액 산정 ·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 법률에서 금액의 산정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만큼,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 규정 필요
 - ※ 시행령에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별표]에서 별도 규정하는 방식도 가능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4.11)에서도 '보상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 다만, 위로지원금 산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설계는 정책적 결정사항인 바, 참고로 아래와 같이 타 입법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미출근 일수(36개월 범위 내에서)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소방공무원법)
 - ※ 본 개선권고와 관련되는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3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 수정

과거사 피해자 지원 관련 위로지원금 기준 비교

지급 방식	법률명	대상	지급 기준(내용)	위로지원금 관련 위원회 기능
신체장애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금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일회 지급 (1명당 2천만원) -부상으로 장애 :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지원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
납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납북관련 피해자 또는 그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위로금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월 최저임금액의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를 입은 납북 피해자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망·행방 불명시기와 통보지연 여부 등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로금 -사망특별위로금 : 사망·행방 불명시기와 사망·행방불명의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장해특별위로금 : 특별위로 기준금액에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지급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 금액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금 -사망위로금 : 98만6천원의 180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수형자위로금 : 17만2천800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수형기간을 일수로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	지리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리사고 피해자 또는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금 ※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는 날 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금 및 의료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접근의 용이성

1. 개요

-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참여 및 의견진술 제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하위규정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2. 평가절차

- ①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관련규정 검토
- ② 관련규정의 충분성 및 실효성 검토
- ③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각종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예시)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계획 입안 제안, 청문, 의견서 제출 등
-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 상 참여 제도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관련규정의 충분성 및 실효성 검토

- 국민의 참여제도를 두고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검토
- 또한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참여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¹³
 -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 최소화 필요
 -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한지 검토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 행정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기타 행정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13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사례 1 협력업체운영지침

평가대상 조문

평가 대상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예측가능성

❧ 현 황

- 부진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규정이 없음

❧ 문제점

- 부진 협력업체 선정 관련 협력업체의 권리침해 우려
 - 부진 협력업체로 선정시 재등록 및 적격심사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별칙을 부과하면서 해당업체의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력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부진 협력업체 선정 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부진협력업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대상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 등 이의신청 관련 행정처리절차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이해관계자(민원인)의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 용이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선결과

협력업체운영지침

제28조의2(이의신청 등) ①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제27조제3호에 따라 부진협력업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대상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7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대상 협력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평가를 담당할 협력업체 운영부서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재평가 요청을 받은 협력업체 운영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협력업체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사례 2 반부패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 현황

- 반부패 청렴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위원구성 기준에 따르면 내부위원수가 외부위원보다 많이 배정

❖ 문제점

- 시민감사관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반부패 청렴위원회는 외부의 객관적 시각으로 공사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수가 내부위원수보다 작아 대표성 확보가 미흡

❖ 검토결과

- 위원회 전체인원 대비 외부위원 비율이 1/2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조정

❖ 개선결과

반부패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인원의 1/2이상 되도록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사례 3 인사관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90조(평정의 수정 및 재평정)

② 직원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근무평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 시에도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정을 하지 않는다.

❖ 평가기준

- 위탁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현황

- 전직원은 매년 인사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승진 및 성과급 지급시 활용되고 있음
-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어렵고, 이의제기시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

❖ 문제점

- 인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직원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이의제기시 공정하게 검토 · 수렴되는 절차가 부족하여 투명성 저하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모호하고, 외부위원 직원 대표가 참여 기회가 부족함

❖ 검토결과

- 개인근무평정에 대하여 이의제기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외부전문가 참여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적정성 검토 과정 도입을 통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결과

인사관리규정

- 제90조(평정의 수정 및 재평정)** ①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평정한 결과는 수정 또는 재평정할 수 없다.
- ② 직원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근무평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기간 종료후에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 ③ 이의제기 발생 시 3직급 이상 간부직원은 인사담당부서장이, 4직급 이하 직원은 사업소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및 직원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 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인사평가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직원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참여기회를 담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관이 평가에 적용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보다는 '접근의 용이성'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됨

참고 제 · 개정 법령 평가 사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현황 및 문제점

- 법률 제7조 제3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경유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계획안은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
 - 이에 따라 제정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곤란

❖ 개선의견

-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예시 열람기간내 의견서 제출 근거,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검토 및 통보 등 세부사항 신설

제정안	개선권고
<p>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략)</p> <p>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신설〉</p> <p>〈신설〉</p>	<p>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략)</p> <p>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계건설사업 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p>③ 제2항에 따라 공고·게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실시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유사 입법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선결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12호, 2014.12.3.)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노선의 주요 경유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기간(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및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된 실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8

공개성

1. 개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 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2. 평가절차

- ①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② 관련규정의 실효성 검토
- ③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사례 1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47조(출제의뢰) ① 국내대회의 과제출제 의뢰는...공단 기술자격출제실장이 위촉하여 의뢰한다.
 제82조(채점결과 발표 및 보고) ④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심사채점 결과(별지 제31-2호 서식)는 공개하여야 하며, 심사채점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참가선수의 선수번호, 과제별 점수, 종합점수, 득점 순위를 포함시켜 직종별 경기장 등에 공개한다.

❧ 평가기준

- 재량 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 현 황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966년부터 6만 여명이 참가하여 7천 2백 여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고, 우수 숙련기술인 양성의 산실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평가전을 통해 선발된 국가대표선수들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통산 18번 종합우승하며 국위선양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큰 기여
 - 정부는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입상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참가선수는 미래 대한민국 명장을 목표로 훈련하여 대회에 참가
 - ※ 상금 지급(국제대회 3,920~6,720만원, 전국대회400~1,200만원),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연간 약1,100만원) 병역특례업체 입사, 지방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 우수 선수 육성기관은 금탑, 은탑, 동탑 등 표창 수여 등
 - 지역별, 훈련기관별 치열한 경쟁의 결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종료 후에는 과제 사전 유출 의혹, 심사위원 유착 의혹 등 채점의 공정성 등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대회의 공신력 훼손
 - ※ 최근 3년(2011~2013)간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건수 평균 6건, 심사채점 관련 발생건수 평균 3건

❖ 문제점

- ① (과제 출제) 전국기능경기대회 과제의 출제 및 검토, 재료구매 및 납품에 장시간 소요(7개월)되어 과제의 출제, 검토과정 등에서 정보유출 가능성 존재
 - ※ 2014.3.10 전국대회 과제 사전 유출의혹 민원제기(국민신문고)
- ② (심사채점) 각 시·도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간에 답합하여 특정 시·도의 참가선수에 대한 점수를 높게 또는 낮게 부여할 수 있는 개연성
 - ※ 일부 심사위원이 작품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타 심사위원보다 4점차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혹제기('14.1.16. 간담회 참석자)
- ③ (채점결과 공개) 참가선수 및 지도교사들이 세부 항목별 채점 결과 공개 요구 및 채점 절차에 대한 투명성 의혹 제기

❖ 검토결과

- ① 과제 출제 방법 변경을 통한 투명성 제고
 - 과제출제방식 변경, 출제기간 단축(7→3개월), 출제과제 전면 인터넷 공개하여 과제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완전 해소하고, 과제의 다양성확보('13년 48개 →'14년 490개)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과제출제(기술자격출제실) • 과제출제 및 검토기간 (7개월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능올림픽대회(WSI) 방식을 벤치마킹 • 각 지역별 시도위원회에서 지방대회 입상자 배출기관에 출제의뢰하고, 출제된 과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 *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http://skill.hrdkorea.or.kr) • 과제 출제 및 검토기간을 3개월로 단축

- ② 심사채점 방법 개선을 통한 심사의 공정성 향상
 - 심사방법 개선, 심사위원 제재사항을 규정화하여 심사과정에서의 답합, 점수 수정, 점수과다·과소부여 등 부정 요소를 원천 차단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채점표에 기록한 점수를 합산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번호표 사용) 심사위원 점수 담합 및 사후 점수수정 방지를 위해 10점 채점 번호표 의무 사용 · (전문성부족심사설명) 최고 및 최저점수 차이가 4점 이상인 경우 그 사유를 심사장에게 설명 및 재심사 · (전문성부족심사위원 제재) 특정 심사위원이 제시한 점수가 가장 낮거나 높게 인접한 점수의 차이가 3점 이상 나는 경우 심진아웃제* 도입 <p style="font-size: small;">* 제재 1회(주의), 2회(경고), 3회(퇴장)</p>

③ 채점결과 공개의 구체화를 통한 부정 의혹 해소

- 채점 결과를 전체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공개하여 채점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혹 해소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번호, 과제별 점수, 종합 점수, 득점순위만 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채점결과 및 선수 채점표를 모두 공개

❖ 개선결과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

제47조(출제의뢰) ① 국내대회의 과제출제 의뢰는...공단 출제 소관 부서장이 위촉하여 의뢰한다. 다만, 전국대회 과제는 시·도위원회에 의뢰하여 출제할 수 있으며...

제79조(채점요령) ⑦ 심사장은 10등급제 채점번호표를 사용하여 채점할 때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의 차이가 4점 이상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4점 이상 차이나게 부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재채점하여야 하며 재채점 하였음에도 4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심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심사장은 해당 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작품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에게는 주의·경고·퇴장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신 설>

제82조(채점결과 발표 및 보고) ④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채점표와 심사채점 결과는 직종별 각 경기장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사례 2 업무추진비 지출 업무처리세척

평가대상 조문

제8조(지출증빙) ③ 이사장·실장·팀장 및 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강화 내부정책에 따라 이사장을 비롯한 팀·지사장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사용처, 대상 인원 등)하고 있음
- 現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팀·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업무추진비 관련 은폐 등 부패발생요인 내재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팀·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율이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노력이 시급함

관련통계

최근 6개월(14년 4월~9월)간 업무추진비 사용자별 집행내역 분석 결과
(단위 : 건,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점유율
부서장	20	14	22	19	27	18	120	41.8%
직원	32	32	27	29	22	25	167	58.2%
합계	52	46	49	48	49	43	287	10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청렴옴부즈만의 제언 2분기 청렴옴부즈만 정기회의 시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관련 직원이 집행시 공개 의무가 없음을 지적하고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
※ 감사탐-669(2014.5.26. : 2014년 2분기 청렴옴부즈만 정기회의 결과 보고)

검토결과

-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대상의 범위를 각 부서장에서 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결과

업무추진비 지출 업무처리세칙

제8조(지출증빙) ③ 지원단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례 3 계약사무 처리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4조(규격공개) ① 수요부서의 장은——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과 사전 협의 후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2. 구매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물품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 공개한 물품
4. (생략)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공개성

❧ 현 황

- 기존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을 구매 추정가격 1억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공개를 실시
- 입찰규격에 대한 사전공개 범위의 적절성 등 검토 필요

*계약관련 법령 상 사전 규격공개 범위 현황

계약관련법령	사전 규격공개 금액
국가계약법령	1억원 이상
지자체 계약법령	5천만원 이상
조달청 내자구매규정	5천만원 이상

❧ 문제점

- 공공기관 등이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규격을 사전공개하지 않아 입찰참여업체들로부터 특혜 의혹 제기

관련 보도

- ○○의회 전산장비 입찰공고에 특정업체만 입찰가능하도록 '규격서'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의회 직원은 8,000여만원 뇌물수수, 해당업체는 뇌물을 대가로 자신들만 공급할 수 있는 **특정사양을 '규격서'에 담아 전산장비 납품독점** 수주(15.5월 언론보도)

- 입찰규격에 대한 사전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필요
- 공개대상 계약유형을 '물품 및 용역'으로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필요
 - 현재까지 '물품'으로 표기하고, 물품과 용역을 포괄하여 적용해 옴
 - 관련법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검토결과

- 사전규격 공개 범위를(계약관련법령)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여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사전 규격공개대상 입찰건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계약유형을 물품 및 용역으로 명확히 함

개선결과

계약사무 처리지침

제4조(규격공개) ① 수요부서의 장은 _____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과 사전 협의 후 사전 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 구매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 공개한 물품 및 용역
4. (현행과 같음)

참고 제 · 개정 법령 평가 사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9호, 2014. 6. 3. 제정, 2015. 6. 4. 시행)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보조금
 -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5.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 3. 건축자산의 보전·건축에 대한 지원
 -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현 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 보조금·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등을 규정

❖ 문제점

- 기부금 출납 불투명
 - 기부금품 중 금전인 기부금을 현금으로 접수·집행할 경우 출납 불투명 우려
 - 기부금을 기관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기관 계좌에 함께 예치할 경우 기부금만에 대한 이자 수익 파악 곤란
- 기부금품 관리 불투명
 -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접수·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운용 투명성 보장 곤란

❖ 개선의견

- 기부금의 수입·지출은 기부금 전용 계좌를 통해 관리(시행령에 규정 신설)
- 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내역 공개 제도 마련(시행령에 규정 신설)

❖ 개선결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9호, 2015.6.1.)

-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예측가능성

1. 개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2. 평가절차

- ①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 ②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 용이성 검토
- ③ 예측가능성 판단
- ④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규정뿐만 아니라 지침, 세칙, 요령 등 관련규정 모두 검토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규정 또는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규정 또는 하위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규정 또는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 평가대상 규정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설내용과 출처 파악
 -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 판단

-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판단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 계약 등 위탁·대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위탁·대행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 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참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검토 요령

-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검토
-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규정이나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 관계규정이나 법령 조항과 허가·인가·협의 등의 기준 검토
- 평가·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해 검토
-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알 수 없음
 - ▶ 소요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검토
-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
 -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 검토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 사례 1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

평가대상 조문

[별지서식 제3호]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 산정 용역 약정서

- 제6조(용역결과 제출) ① “수주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용역결과 3부(공무원가계산 집계내역 등을 엑셀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CD-ROM 등 보조기억매체 1개 포함)를 용역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용역결과물 제출시 “수주자”의 용역수행책임자가 “용역결과보고서”에 직접 확인,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주자”가 제출한 제1항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검토 후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수주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를 반영한 결과물을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5] 용역보고서 작성기준

가. 용역보고서 양식

보고서 양식 및 주요내용

<p>하자판정 및 기초금액 산정 보고서</p> <p>【○○○ 아파트】</p> <p>20 년 월 일</p> <p>○○공사</p> <p>수행기관 : (주)○○○건축사사무소</p>	<p>【목 차】</p> <p>〈 결과 요약문 〉</p> <p>I. 용역 개요</p> <p>1. 대상건축물 개요</p> <p>2. 하자보증이행 신청 개요</p> <p>3. 용역수행 일지</p> <p>II. 하자판정</p> <p>1. 하자판정결과 요약</p> <p>2. 하자판정 내역</p> <p>3. 특이사항</p> <p>III. 기초금액 산정</p> <p>1. 기초금액 총괄표(원가계산서)</p> <p>2. 내역서</p> <p>3. 수량산출서</p> <p>4. 특이사항</p> <p>IV. 종합의견</p> <p>[부록]</p> <p>1. 하자현황 사진</p> <p>2. 하자현황도</p>
---	--

※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산정의 결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요약문 및 종합 의견을 보고서 서두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현 황

- 기관은 하자보수보증이행(이하 ‘하자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이행운용지침」(이하 ‘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책임 있는 하자의 확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음
- 지침 제17조에서는 기관이 수령하여야 할 용역결과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용역 수행책임자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직접 확인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지침 제12조의 별지서식 제3호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산정 용역 약정서’(이하 ‘약정서’)에서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음
- 지침 별표5의 ‘용역보고서 작성기준’은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는 동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증이행 대상 및 이행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동 용역보고서는 공사의 보증이행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서류가 됨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

제12조(용역기관 약정체결) 영업부서장은 용역기관을 선정한 경우 별지서식 제3호(하자판정 및 기초금액 산정 용역 약정서)에 의해 약정을 체결한다.

제14조(용역수행) ① 영업부서장은 용역기관 용역 수행시 현장점검 및 별표5(용역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과업지시 등을 통해 용역기관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약정서는 용역계약과 관련한 제반 이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5의 ‘용역보고서 작성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어, 용역업체 입장에서도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며,
- 기관 입장에서도 계약이행과 관련한 업체와의 분쟁 가능성과 필수적인 용역 결과물 누락 등 하자이행을 위한 원활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하자이행 용역 약정서 및 보고서작성 기준 개선
 -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 별지서식 제3호의 약정서 상 용역보고서 작성 기준 준수 의무 명시
 - 용역보고서 작성기준 양식에 용역보고서 구성요소와 작성방법 명시 등 구체적인 작성기준 마련

❖ 개선결과

하자보수보증이행운용지침

【별지서식 제3호】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 산정 용역 약정서

제6조(용역결과 제출)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수주자”는 “발주자”의 「용역보고서 작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역결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5】용역보고서 작성기준 <신 설>

■ 용역보고서 구성

1. 표 지 : 제목, 사업장명, 제출일자, 수행기관명을 명시합니다.
2. 제출문 :
 - 1) 하자판정 및 기초금액산정의 결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요약문 및 종합 의견을 보고서 서두에 정리
 - 2) 용역 최종결과인 하자보수 기초금액을 기재
 - 3) 용역약정서에 따라 용역수행책임자가 반드시 서명 후 제출 등
3. 목 차 : 용역보고서 본문 내용에 대하여 목차를 나열 등
4. 본문 : 본문 내용 및 작성 요령 명시 등
5. 부록 (최대한 구체화)
 - 1) 하자현황 사진 : 하자별 컬러사진
 - 2) 하자현황도 : 설계도 및 입면도 등 상에 하자 발생 위치 표시 등
 - 3) 공사비 적용기준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하자보수 단가표 등
 - 4) 엑셀파일 : 공사원가계산 집계표, 하자판정내역, 하자보수내역서 등

▼ 사례 2 계약사무처리지침

평가대상 조문

평가대상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 황

- 종전 입찰보증금 관리 등을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왔으나, 내부규정에 관련내용이 불비하여 개정 필요
 - 입찰보증금 납부금액을 국가계약법령상 정한 금액으로 명문화하고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징구관련 절차 명확화 필요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① —————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입찰보증금 운영 상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기업·국민부담 가중
 - 일부 공기업 등에서 입찰보증금을 정률이 아닌 ‘0% 이상’*으로 공고하여 입찰 참가자의 과다 납부를 유발

- ※ 관행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표기
- 계약미체결의 사유가 낙찰자 책임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납부 고지누락 등 입찰보증금 징수관리가 부실

입찰공고 시 불명확하게 입찰보증금 명기 사례

- (물품) A공사는 윤활유·엔진유 물품 구매 입찰공고에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 수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기
- (용역) B공사는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을 면제(지급각서로 대체)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5%이상을 공사로 귀속한다고 공고
- (공사) C공단은 공단 환경공사 제한경쟁입찰 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관련하여 국가 계약법 제37조 및 제39조에 의합니다'라고만 안내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가격의 10%이상의 공매 보증금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공고

↳ 검토결과

- 과도한 입찰보증금 귀속을 방지하고 입찰보증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규 개정 추진
 -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금액범위 중 최저금액(100분의 5)으로 명기함
-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징구절차 시기 등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

↳ 개선결과

계약사무 처리지침

- 제9조의2(입찰보증금 관리)**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최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 또는 분임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례 3 근로자 문화예술활동 지원규정

평가대상 조문

평가대상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제재 규정의 적정성, 부패통제장치의 체계성

❧ 현황

- 근로자 문화예술활동 지원규정에서 참가 희망자의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 자격 확인 서류 제출의무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

❧ 문제점

- 참가자격 확인 서류(개인정보자료) 요구 근거 불비
 - 규정의 근거가 없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예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이 적정한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부적격자가 예술제 수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에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소속사업장, 직위, 직급, 입사년도, 연봉 등)가 다수 포함

❧ 검토결과

- 자료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 참가자의 예측 가능성 등 보완 필요
 -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참가자의 서류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공단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참고 제 · 개정 법령 평가 사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 제9조(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사고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중에서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조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어린이 제품 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하여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법 제14조)
 - 사고원인 조사의 방법과 절차, 사고 조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
 - 제정(안)은 어린이제품사고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중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어린이제품 사고 조사기관의 자격요건·지정기준이 불투명
 - 어린이제품사고 조사기관 지정요건으로 어린이제품사고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사고조사 전문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아 사고조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저하
 -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고조사 기관을 지정할 우려

❖ 개선의견

- 어린이제품사고 조사기관의 자격요건 · 지정기준 구체화

❖ 개선결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3호, 2015.6.4.)

제12조(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사고조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기관은 발생한 어린이제품사고에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10 이해충돌 가능성

1. 개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2. 평가요령

- ①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③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④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평가요령 개략

-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필요성 여부는 획일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질¹⁴, 위원회 업무성격¹⁵, 규정 실익 등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14 의결기관과 단순 자문기관의 위원은 구별하여 평가기준을 신중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15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는 심의를 하거나, 분쟁 조정·중재 등의 업무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단순 자문위원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예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예시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¹⁶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임기 규정¹⁷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 제척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나 심의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기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¹⁸
- 회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겸직·영리행위 금지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해촉제도 규정¹⁹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18 위원회 운영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어 당사자가 사전에 위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피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도시개발위원회의 경우처럼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등의 계획수립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자로서 기피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개발구역예정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재(가족포함)를 심의·의결에서 배제토록 규정함으로써 보완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참고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정관, 사규)

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00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0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00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00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000장관(각 부·처·청 등 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 업무 및 성격에 맞게 제척 사유 및 해촉 사유 변경 가능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 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사례 1 인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의사) ③ 의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

❧ 현 황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인재 개발위원회 설치·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는 직원의 승진 및 포상 등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사장(위원장) 및 집행임원(위원)으로 하여 구성·운영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구성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 제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배제 의무화하거나 기피신청 제도 등 시스템 미비

❧ 문제점

- 위원회 심의과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흡
 -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등 시스템 미비

- 직원 채용 등 인사 관련 비리 발생
 - 2012. 11. ~ 2013. 4 기간 중 진행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되어 당시 인사팀장을 면직 처리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엄한 징계 처분

관련자 징계 현황

구분	면직	감봉	근신	견책	계
인원	1명	2명	1명	3명	7명

↳ 검토결과

- ‘이익충돌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채용, 승진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

↳ 개선결과

인사규정

- 제13조의2(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채용, 승진 등의 경우 심의 대상자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특혜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례 2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 생략 >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 황

- 현지조사란 병·의원 등이 지급받은 진료비용에 대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 부당금액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형사고발 등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침익적 처분을 하고 있어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위법·부당한 청탁 및 금품·향응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또한, 기관은 진료비 심사·평가를 위하여 진료기록부 해독능력 등 의학지식을 갖춘 병원근무 경력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을 다수 채용하고 있는데, 이전 근무병원과의 유착 혹은 특혜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없는 인력으로 현지조사반 구성 필요

타기관 관련 사례

한국○○공사는 한국○○공사 출신 퇴직직원이 근무하는 설계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전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체하고만 계약하는 등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014년 국토위 국정감사>

❖ 검토결과

- 현지조사 요원의 제척·기피제 운영
 - 현지조사 요원이 병·의원, 약국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 과거 현지조사 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연·지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반 편성에서 제외
 - 직원 본인의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족의 병·의원 개설 혹은 근무현황, 출신 지역, 출신고교, 기관 입사 이전 근무병원 현황을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조사반에서 자동으로 편성 제외
- ※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선 및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개선결과

인사규정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현행 본문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관련자가 (기관)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신 설>
5. 직무관련자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신 설>

▼ 사례 3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평가대상 조문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③ 제3조제13호에 따른 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련 공기업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 임원,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정교수

라. 공단 기술직렬의 처장 및 부장 이상의 직원 다만, 해당 자격자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부장 직무대리까지 위촉 가능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 현 황

-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특수분야가 많고 참여업체가 제한되어 업체로비 치열
- 특정학교 출신 등이 관련 민간업체에 다수 포진하고 있고 심의위원풀에도 다수 포함됨에 따라 입찰심의 시 특정업체 특혜 발생 가능

❖ 문제점

- 실제 설계·시공 일괄공사 등의 심의위원으로 특정학교 출신 내부직원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 발생
- 기관은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차단장치를 마련·운영 중이나 심의위원풀(Pool) 구성의 구조적 한계 노출

❖ 검토결과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풀(Pool)을 구성시 내부위원의 경우 전문분야별로 특정 학연 출신비율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위촉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 개정

❖ 개선결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③ 제3조제13호에 따른 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2. 가.~라. (변경없음)

마. 분과위원 중 외부위원은 공단출신을 가급적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 1~2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내부위원의 경우에도 전문 분야별로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교 출신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전문분과(사업계획 등) 중 ○○분야를 주 전공으로 하는 학교 출신자의 과반수 이상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신 설>

▼ 사례 4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현 황

- 공단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함

❧ 문제점

- 금전적 이해와 관련해서 명확한 금액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행동강령 조문상 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공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다른 법령의 수준과 적정하여야 함

↳ 검토결과

- 금전적 이해관계에 대한 명확한 금액 기준이 신설 필요
- 금액 기준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수준(100만원)으로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공적 업무추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 개선결과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여러 공직유관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를 임직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 기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됨

▼ 참고 제 · 개정 법령 평가 사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2조의2(사무국)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과 근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의 설치 근거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따른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결기관

현 황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의결을 위해 사무국의 설치 등의 법률 근거 마련에 따라 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도

건강보험 심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건강보험 심판청구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처분

건강보험 심판청구 절차

- (심판청구서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제출
- (심리·의결) 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재결 및 결정통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 발생

연도별 건강보험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심판청구 현황	3,699	4,441	7,468	22,712	25,135	24,966	
심판청구 처리현황	3,035	3,422	5,438	10,859	17,173	10,382	

※ 자료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문제점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처분의 분쟁을 심리·의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원이 해당 사건에 자문·진술·감정 등을 한 경우 의결 과정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개정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 장치 없어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기관·단체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될 소지가 있고, 공정한 심리·의결이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부재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장치(제6조제2항제4호)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의 부패 사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4일 00여대의 옛 비리재단 쪽 인사들을 대거 정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000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00여대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00여대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 1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오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 (한겨레, 2011.07.15)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저해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부재

❖ 개선의견

- 심리·의결 과정에서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을 해친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

❖ 개선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29호, 2014.6.30.)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 개요

- 당해 규정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규정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 ※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시 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타율적 청렴성 제고가 아닌 자율적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신설한 평가기준임

2. 평가절차

- ① 관련 부패사례 검토
- ②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③ 부패방지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규정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예시** 권익위 부패신고·처리 사건, 내부감사 및 감사원 적발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언론 보도사항 등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예시

부패방지 장치	세부사례
민간 참여 확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내부감사에 참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예 의한 회계감사 ⁷ 및 감독기관의 회계감리
	계약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하여 업무처리 과정 모니터링
	채용 과정에서 외부위원 필수 참여
내부 행동강령 강화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제한, 골프 금지
	공무원 가족의 산하기관 채용 제한
	임용 전 재직 업체 관련 직무 수행 금지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 간 사적 접촉 제한
부패신고 활성화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강화
	부패신고 대상 확대(알선·청탁, 업무정보 유출, 전관예우 등) 신고보상금·정기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장치 운영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자재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통한 자재 이력관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통한 계약과정의 모든 서류 전자화
	기술평가위원 전자선발시스템 도입을 통한 무작위 선정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경우나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참고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필요없는 이유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같은 부패 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 법적·제도적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 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
 - ▶▶ 계획 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내용 별도 붙임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규정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 사례 1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지침

평가대상 조문

평가대상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 제약회사, 의료기업체의 영업사원 등 직무관련자들이 병원 의무직원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 사적접촉을 기도하는 경우가 발생
-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병원사업장의 특성상 제약회사, 의료기업체의 영업사원 등 직무관련자들이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며 병원 의무직원 등 직무관련 직원들과 불필요하게 빈번히 접촉하여 부정청탁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금품 등 제공을 시도할 우려

❖ 문제점

- 2016년도 병원사업장 2곳에서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직무관련자와 동호회 활동을 같이하면서 관련비용을 먼저 대납케 한 후 사후정산하는 등 2건의 사고가 발생

관련 사례 1

○○병원 영상의학과장 △△△와 검사실장 ▽▽▽의 주도로 회식 시 납품업체 직원과 동석하거나, 회식 종료 후 납품업체 직원이 대신 회식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4건의 회식비 2,435,000원을 전가

관련 사례 2

○○병원 병원장 ◎◎◎은 직무관련자인 □□약품도매상 ㄷㄷㄷ대표와 요트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개인요트 정박료 2024천원을 대납하게 하고 사후 계좌송금 처리하였으며 요트 수리비용 등에 필요한 제 비용을 직무관련자인 ㄷㄷㄷ 대표에게 대납하게 하고 사후 변제 처리하였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퇴사

❖ 검토결과

- 직무관련자와는 사적 접촉을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직무관련자가 병원을 출입하는 경우 관계직원을 만나기 전 방문대상, 방문목적 등을 출입대장에 먼저 작성토록 하여 출입을 통제함
- 직무관련자에게 계약 체결시 사적접촉 제한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약서를 징구토록 함

❖ 개선결과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지침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에 정하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리) (생략)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사적접촉의 제한

제4조(사적 접촉의 제한)

1.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 식사, 여행, 회합 및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정보 및 학술적 회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 ③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 행사 등에서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
 - ④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제5조(대장 작성 및 관리) 각 병원에서는 병원에 출입하는 직무관련자의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약서 징구) 각 병원에서는 의약품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적 접촉 제한 지침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사례 2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7조(부당이익의 징수)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소속 의사 및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약국(소속 약사 및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진료비·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8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받은 진료비·약제비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 평가기준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의 75.8%가 사무장병원에 관한 것으로,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어 복지급여를 불법 편취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방안 마련 필요

관련 사례 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1년...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최다

지난 1년간 총 환수 추정액의 75.8%는 '사무장병원 몫'

관련 사례 2

『보험사기꾼 종합 집합소』 사무장 병원 적발 (중앙일보 2014.10.29.)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보험설계사와 짜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의사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개원한 후 환자를 허위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해당 병원 원장 이씨는 광진구 구의동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편취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징을 당하게 되자 다른 한의사의 면허를 빌리고 이름만 바꿔 또 다른 병원을 개설했다.

관련 사례 3

산재병원 알고 보니 ‘사무장병원’ (아시아투데이 2014.10.21.)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된 68개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양 의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 요양하던 산재 근로자가 실제로는 불법 의료기관을 이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산재지정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 지정취소 현황**

(‘14.9.30.)

구분	지정 취소	부당이득액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취소된 사무장병원	92개소	11,791,099,510원

-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취소처분 시 산재보험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등 불이익 장치 부재

↳ 검토결과

-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배액징수 대상 명확화
 -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약제비에 대하여 배액징수 대상으로 규정
 -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 운영하는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도 배액징수 대상 포함

↪ 개선결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5. 「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약제비
6. 「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2016년도에 바뀐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부패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한 것으로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됨

▽사례 3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평가대상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황

-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직 등이 진료업무에 도움이 되고 참석자 대부분이 국공립 대학교수가 포함되어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 의료기기업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해외교육 · 세미나에 소속기구장인 병원장의 사전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참석
 - 교육 참석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 식사 비용은 업체에서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원하였고, 병원별 자체 국외여행 심의 과정을 거쳐 참석 승인해 줌

❖ 문제점

- 진료업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소속기구장에게는 재량권 발생 가능성 존재
- 업체에서 해외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의사직에 한해 지원하는 배경은 물품 판매 목적이 상당하고, 결국 이 과정에서 시공간적으로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 있음

❖ 검토결과

- 소속기구장에게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재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해외교육·세미나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석불가하도록 규정하고,
- 직무관련 참석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업체로부터 일체의 비용 지원받지 않고 공단 예산으로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함

❖ 개선결과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의4(업체주관 해외교육·세미나 참석 제한) 리베이트 사전 예방을 위해 공단 임직원은 의약품·의료기기업체(협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해외교육·세미나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참석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또는 소속기구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참석하되, 공단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참석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2016년도에 바뀐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패방지장치의 체계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례 4 경매매체관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24조(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경매매체의 취재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전하고 유익한 경매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경매정보의 수집 및 취재에 있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보도는 공정하여야 한다.
3. 마권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회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득한 경매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등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경매의 공정성 확보와 취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본회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회의 재산을 파괴·훼손하거나 임의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 현황

경주마사 출입 가능한 취재종사자의 지득 정보 악용 사례 발생

- 경주마사 출입 및 관계자와의 밀착 취재가 가능한 경매매체 종사자가 지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을 현혹하는 과대·과장 홍보성 ARS예상 영업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고객 민원이 VOC(고객의 소리)에 지속 신고됨
 - 정보에 예민한 고객 특성을 악용하는 취재종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원천 차단필요
 - 투명경영 및 고객만족 경영 달성위해 교육·홍보 외에 규정 개정 등 제도화 노력 요청

- 마사지역 출입 등 정보접근권을 부여받은 경매매체 취재종사자 중 일부가 취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로 '유료 ARS' 등 경매정보 제공업을 운영하고 있음
- “경매매체관리규정”에 취재종사자의 동 영업행위를 금지대상으로 명시하기 어려워 ARS경매정보제공업에 대한 원천 차단은 불가

< 경매매체 현황 (2015.10월) >

전문지	예상사이트	유료ARS업체	취재종사자
경매문화 등 26개	검빛경매 등 8개	790개	70명

- 다만, 일부 관련자가 ARS 영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기관에서 확인 받은 공신력있는 정보처럼 고객을 허위로 현혹하는 비윤리적 사례”가 지속 발생함

※ ARS영업 관련 비윤리적 홍보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13년 4건→’14년 9건, 125%증가)

❖ 문제점

- (고객) 불건전한 경매 ARS 예상영업방식*으로 파생되는 고객의 재산상의 손해** 및 혼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는 바, 이를 방지할 경우 최근 “기사형 광고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언론보도 사례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어 경영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대내: 개인에 대한 피해발생을 호소한 고객불만제보사례(VOC, 2015. 8월)

사설경매 보다 개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예상가의 잘못된 장담에 의한 피해입니다. (중략) 경매시행체이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은 강력한 대처방법과 제재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기사형 광고 논란으로 피해자 발생을 보도한 사례 (KBS, 2015.7월)



이게 기사야? 광고야? 기사형 광고 논란 KBS TV | 2015.07.19. | 네이버뉴스 | 먼저 방금 들어온 부동산 특보 소식입니다. 김 기자, 어떤 상품입니까? 종합평성채널의 현직 뉴스앵커가... 인터넷 신문에 홍보성 기사까지 났는데, 기사를 믿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백 여 명이 넘습니다. <질문...>

- * '마사지역 출입기자 신분으로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다,'이 정보는 제한 구역인 마사 지역 출입을 통해 확보한 승부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다'등의 내용을 직간접으로 홍보하는 행위
- ** 고객 1인당 일평균 구매액은 560,745원으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할 경우 상당 금액이 고객재산상 손해로 이어짐('15.10월 기준)
- (공정경주) 일부계층에게 정보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인식으로 경매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우려
 -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영업형태를 방지할 경우 “경매 승부에 관한 주요정보가 일부 계층에게 독점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고착화되어 경매시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

- (제도화) 현행 규정 상의 준수 의무(제24조)에 동 행위 방지를 위한 내용이 미비하여 제재 및 처벌 곤란
 - 매체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공정성·투명성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행위에 대한 추상화*로 마사회가 ARS 영업행위를 제재할 경우 시행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 (동 규정 제2호) 경마정보의 수집 및 취재에 있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보도는 공정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 (규정개정) 마사지역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취재종사자의 ARS 예상영업 활동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새로이 명시함으로써 고객민원을 해소하고 공정경마문화를 조성
- (고객캠페인시행) 불건전ARS예상에 대한 고객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시행 ☞ 오늘의 경주 및 경마방송통한 34회 홍보

❖ 개선결과

경마매체관리규정

제24조(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경마정보를 제공할 때 본회에 등록된 취재종사자임을 밝히거나 마사지역 출입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관련 부패사례를 기반으로 취재종사자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경마정보 제공의 책임성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제 · 개정 법령 평가 사례 : 환자안전법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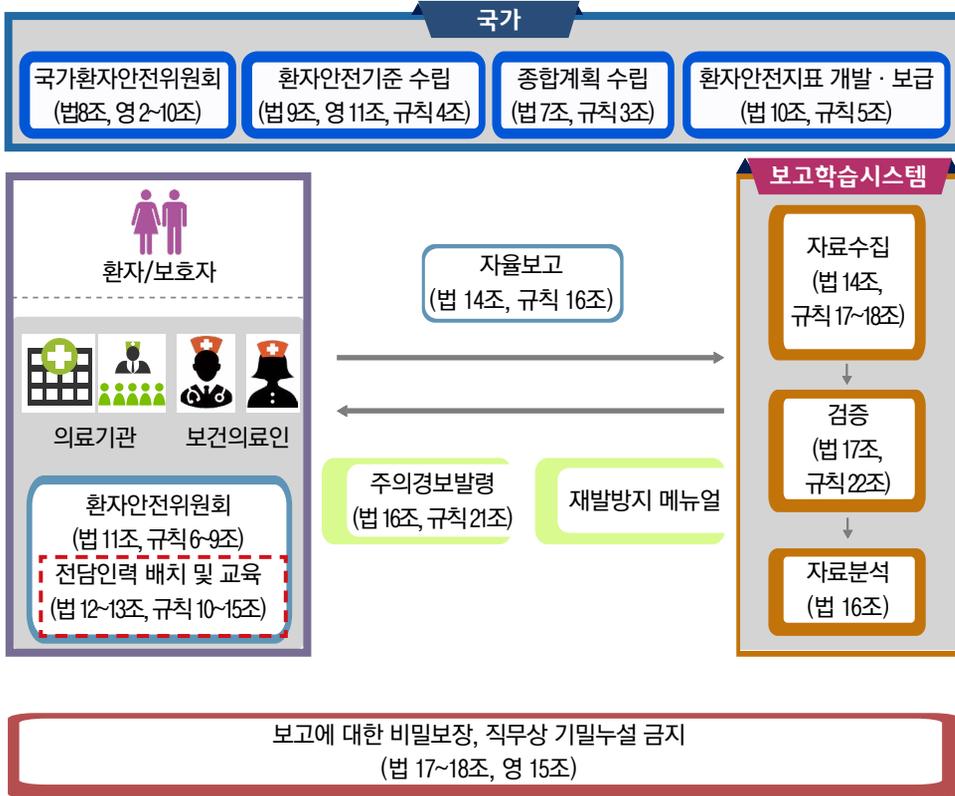
제8조(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①~④ (생략)

⑤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현 황

- ‘환자안전위원회’ 개요
 - (설치) 환자안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 (심의)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 체계 구축·운영,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
 -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부과

환자안전 법령의 주요내용 현황



❖ 문제점

- ‘환자안전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비밀 누설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부과 규정 도입 필요
 - ‘환자안전위원회’는 200명상 이상의 병원 등에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환자안전 체계 구축·운영 등 이외에,
 -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라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고자 보호 등을 위해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필요
 - 또한, 비밀누설금지 의무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벌칙 부과 필요

❧ 개선의견

Ⓢ 추후 법률 개정 시 반영사항

-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규정 신설
 - 위원회 심의과정에 참여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 부과
-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 전·현직 위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 개선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조(비밀준수 의무) ①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조(벌칙) 제△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의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타 법률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하도록 함

유사 입법례

결핵예방법

비밀준수의무

- 제29조(비밀누설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벌칙

-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모자보건법

비밀누설금지

-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벌칙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자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참고자료

- ①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 ② 부패영향평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③ 관련 법령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부담 · 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 부담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할 수는 없는가?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③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 하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 하고 있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토 항목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 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 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⑥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 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⑦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⑧ 공개성

검토 항목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⑨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⑩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①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⁸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기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측가능성) 	
신청 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 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측가능성) 	

⁸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이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 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 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 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특혜발생 가능성) 	

② 부과·징수 업무⁹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절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예측 가능성) 	
가중 ·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절한지 검토 	

9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이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 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체납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③ 보조·지원 업무¹⁰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근거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10 보조·출자·출연·옹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관리 ·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을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¹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④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관리 ·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 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 부담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⑤ 행정조사 업무¹²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¹³(재량 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 ·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 기간 · 방법 ·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 의무 등의 규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 · 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내용 · 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12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 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 · 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 · 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13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 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¹⁴(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 업체에 대한 통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 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14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⑥ 단속·점검 업무¹⁵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이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성의 용이성)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15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 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 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 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 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 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 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 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 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 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 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⑦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금품 ·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구성시 내부 · 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이해충돌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제척· 기피·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이해충돌가능성)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 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 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인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특별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 · 관리하고 있는가?(공개성) 	
기관장 재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 · 승진 · 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 · 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검 토 항 목(적용기준)		평가 결과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p>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p> <p>1. 부패유발의 가능성</p> <p>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p> <p>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 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지 여부</p> <p>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 하는지 여부</p> <p>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p> <p>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p> <p>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p> <p>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p>

법 른	시 행 령
	<p>3. 행정절차의 투명성</p> <p>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p> <p>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p> <p>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p>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p>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p>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 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 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4호
 개정 2011.10.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5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개정 2013. 6.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8호
 개정 2015. 1.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2호
 개정 2015. 3.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5호
 개정 2015.11.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시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의뢰하여 접수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 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③ 평가 의뢰 문서를 전달받은 평가담당자는 이를 인수하고 과장까지 선람하게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평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답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답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사항에 대한 결재 : 부패방지국장
2.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재 : 담당과장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보좌관(「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는 법무보좌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는다.

-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반기별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중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기초자료·세부자료 접수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세부자료의 접수,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

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2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안 권고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안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지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행한 부패영향평가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4호, 2010.4.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5호, 2011.10.7.>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8호, 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2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5호,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0호, 2015.11.13.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 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별지 제 1 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 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자문 사유	관계기관 협의	담당자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입법예고	협의기간	...부터 ...까지(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작성자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별지 제 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수

문1.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 작성사항

< 표 1-1 >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참고자료>

1	
2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㉞ 작성사항

<표 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 · 타당성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 작성사항

< 표 1-3 >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제재현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집행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㉔ 작성사항

< 표 2-1 >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 항)	재량의 내용

< 표 2-2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문5-1.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① 명확 ② 불명확

문5-2.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 2-3> 위탁·대행·규정

번호	위탁·대행 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추가설명> 위탁·대행 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6-1.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6-2.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 표 2-4 >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추가설명> 유사지원제도와와의 차별성 또는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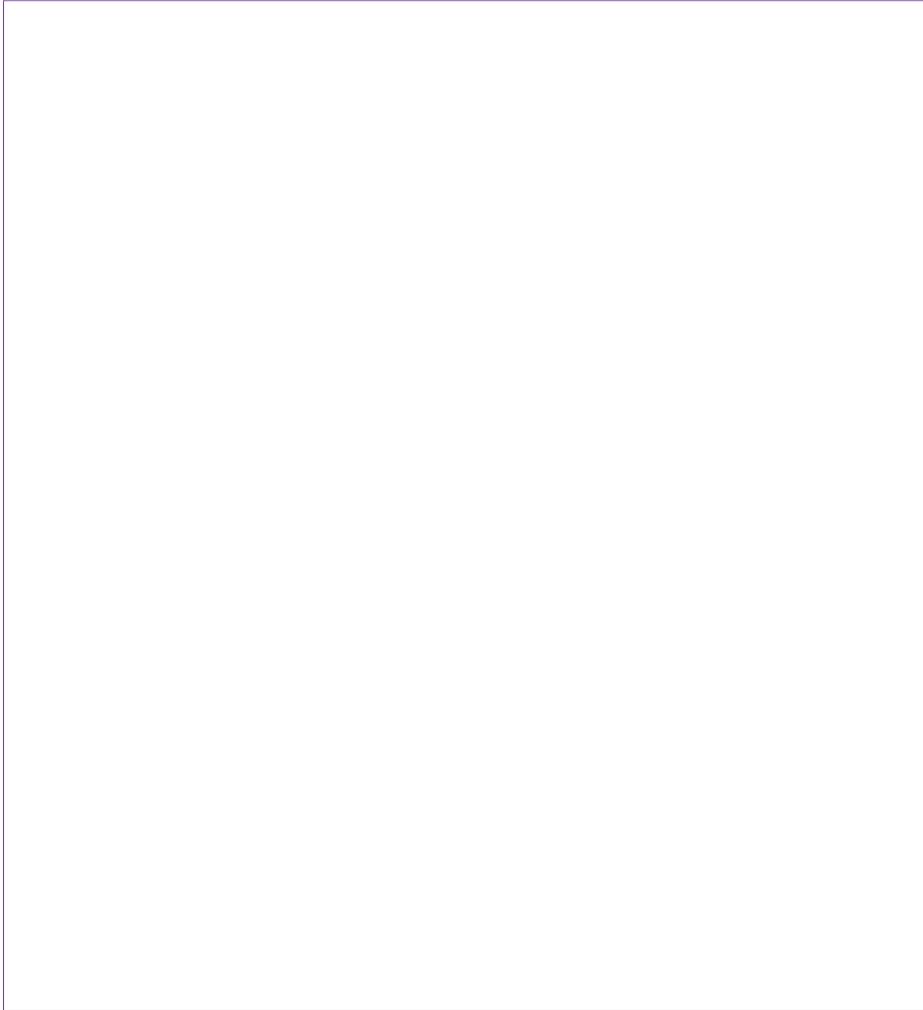
<참고자료>

1	
2	

행정절차

▶ 작성사항

< 표 3-1 > 업무흐름도(workflow)



문 7.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㉔ 작성사항

< 표 3-2 >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 8. **공개성** 관계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 표 3-3 >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 9.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㉔ 작성사항

< 표 3-4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부패통제

문10.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 표 4-1 > 이해충돌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㉔ 작성사항

<표 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구 분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별지 제 3 호 서식

기초 평가서

Ⓞ 평가법령 : (. . .)

의뢰 사유	제·개정 목적					
	제·개정 주요 내용					
평가 결과	원안동의		개선권고		참고의견	
	권고요지					

Ⓞ 최근 3년간 평가내역

제·개정 목적	1차				
	2차				
	3차				
	...				
평가 결과	횟수	평가항목	권고내용	반영여부	
기타 (현행법령 평가대상 등)					

별지 제 4 호 서식

세부 평가서

▶ 법령명: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별지 제 5 호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 대상 법령	
법 령 명	
소 관 부 처	
2. 평가 의견	
<p>※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 분야: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 분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 행정절차 분야: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 부패통제 분야: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개선요구 사항	
4. 참고 사항	
<p>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p>	



2016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발행일 : 2016년 12월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TEL : 044) 200 - 7657

FAX : 044) 200 - 7941

홈페이지 : www.acrc.go.kr